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

제정 2011. 7. 8 조례 제1160호 일부개정 2011. 11. 3 조례 제1182호 일부개정 2012. 8. 3 조례 제1239호 일부개정 2013. 1. 8 조례 제1267호 전부개정 2014. 8. 8 조례 제1385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유통산업"이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- 2. "대규모점포"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.
- 3. "준대규모점포"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.
- 4. "대형유통기업"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(이하 "대규모점포 등" 이라 한다)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- 5. "중소유통기업"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6. "상생발전"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·자금·구매·판 로·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 나 활동을 말한다.
- 7. "전통시장"이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 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.

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・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
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용인시(이하 "시"라한다)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.
- 제4조(시민의 권리 및 책무) ① 용인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 - ② 시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,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사업자의 책무)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유통산업 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지역유통산업 발전 추진계획 등

- 제6조(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(이하 "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유통업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
 - 2. 유통업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
 - 3. 유통업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
 - 4.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
 - 5.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
 - 6. 유통업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
 - 7.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

서의 유지 방안

- 8. 유통업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
-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,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 의를 거쳐 확정한다.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제7조(유통산업의 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- 1. 대규모점포, 무점포판매 및 도·소매점포의 현황, 영업환경, 물품구매,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
 - 2.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·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
 - 3.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
 - 4.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
- 제8조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·운영) 시장은 법 제7조의5 및 법 시행규칙 제4조의2부터 제4조의3까지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9조(협의회 위원의 수당) 협의회 위원에게는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10조(협의회에 대한 지원)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

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・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

- 제11조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·변경할 수 있다.
 - 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
 - 2.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
 -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
 - 2. 주택재개발,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 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
 - 3. 법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 여 그 지정의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
 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·변경·지정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 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 - ④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·변경·지정취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용인시 홈페이지 등에 공 시한다.
 - 1.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위치
 - 2.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·변경·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
- 제12조(전통시장 등의 보전(保全) 활동 및 지원)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 상점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・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

- 제13조(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)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(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「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.
 -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4조(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)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.
 - 1. 제13조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
 - 2. 시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
 -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시장은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.
- 제15조(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2에 따라 시의 대형마트(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)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,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.

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・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

- 1. 영업시간 제한 :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
- 2. 의무휴업일 지정 :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. 다만, 이해당사자 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5장 상거래질서의 확립

- 제16조(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)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용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 -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- 제17조(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(대리인인 경우 포함)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.
- 제18조(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) 위원회 위원에게는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

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

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9조(위원회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위원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9조제7호 및 제8호,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, 제8조제2항,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」 중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삭제한다.

② 제1항의 심의사항은 「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구성한 협의회에서 심의한다.

부칙〈2011. 11. 3 조례 제1182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2. 8. 3 조례 제1239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3. 1. 8 조례 제1267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4. 8. 8 조례 제1385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